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3년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예산

가.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2월 6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년 12월17일

다. 상정일자 : 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 상정,개요설명,심사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12) : 심사보고서 채택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가. 제안이유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변경된 국도비사업 조정과 최소한의 자체사업 및 필수경비등 반영을 위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7,25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82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3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11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73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16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13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969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964억 3,642만원 대비 4억 6,3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3억 3,361만원이 ,
- 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가. 일반회계

1) 세 입

- 일반회계 세입은 3억 3,3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인 지방세 3,431만원과,
 - 세외수입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 지방교부세는 3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국도비보조금은 4억 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증가분이고
-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액분이며,
- 지방교부세의 감액분은 평창 소도읍정비 정비사업의 교부금 감액에 따른 것임..
- 국도비 보조금은 생계급여사업, 수출파프리카시설개선, 천연동굴 학술조사용역,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계상된 것임.

2) 세 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3억 3,361만원이 증액되었음
- 먼저 일반행정비는 2억 5,17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무원 인건비중 수당·복리후생비등 법정경비 정리분임.
- 다음, 사회개발비 총5억 2,084만원의 감액은 보육시설 운영비 3억 5,429만원은 증가된 반면, 평창읍 소도읍 정비사업 3억 5,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000만원이 감액된데 원인이 있음.
- 다음 경제개발비는 총6억 7,83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수해위험요소 종합진단 용역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1억원, 새농어촌건설 운동 우수마을 시상 3억원, 수출파프리카 시설개선 2억원등임.

- 지원 및 기타경비는 7,56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비비 감소에 따른 것임.

3) 계속사업비

- 계속사업비는 기존사업 8건, 신규사업 7건등 총15건의 사업으로 기존사업 8건, 전체사업에 대하여 수정을 하여 사업비를 증액 내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민물고기 생태관건립공사등 7건을 새로이 계상하였음.

- 계속비사업비는 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획된 기간내 추진하므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총사업비 1,243억 5,811만원중 503억 4,983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0%를 명시이월하는 것임.

- 이월되는 주요사업은

-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5억원, 지장암 묘사채 신축 7억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8억 6,500만원, 평창읍 비위생 매립장정비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8억 600만원, 장수교 수해복구 14억원,

평창읍 소도읍정비사업 21억 4,300만원, 시가지주차장 조성사업 18억 4,500만원, 취락지구 개발사업 10억 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며 그외에는 8월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사업이 대부분 이월사업임.

-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 원인이나 그외에도 부지선정지연, 보상지연,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계획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특 별 회 계

○특별회계는 총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44억 7,791만원대비 0.1% 증가한 것임.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설급수공사 사업비이고
- 수질개선 특별회계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흙탕물 저감시설(요탁 방지막)사업비 증액에 기인한 것임.

다. 기 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 과목경정, 공무원 인건비등 필수경비 조정등 불가피한 조정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입업경영과 임대 국고보조금 반환 이유는?	○ 장암산 올라가는 부분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일부 구간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중복이 되기 때문임.

6. 토론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원안가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붙 임 :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의결조서 1부 . 끝 .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 결 조 서

1. 예산총칙 : 제1조 ~ 제7조 변동사항 없음
2. 일반회계 : 세입·세출 변동사항 없음
3. 특별회계 : 세입·세출 변동사항 없음